이 추록은 2024 『CORE(코어) 세법학』 제10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
## 1. 정오사항

면	행		조거이 내용	771.110
	좌측	우측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86	상 5		(거시고 저기장)	(거시고 저 거게)
	상6		(결산조정 <u>사항</u> )	(결산조정 <u>전제</u> )
176		상 6~7	기준에 해당하는	기준 <u>이상에</u> 해당하는
243		상 10	상장주식은	상장주식 <u>및 가상자산</u> 은
283	상 10		사업 영위	사업 영위. <u>다만, 면세를 포기함으로써</u>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
309		상 16(개정)	2024년 <u>4월</u> 30일	2024년 <u>6월</u> 30일
361		상 5	징수함	징수함. 다만,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·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423		상 6	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	<u>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</u>

## ☑ p.80 왼쪽 하 2~오른쪽 상 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①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): 배당

② 직원(임원 포함): 상여

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:기타사외유출

④ 위 ①~③ 외의 자:기타소득

## ☑ p.348 왼쪽 하 8~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- ③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⊙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
  - ①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 이 비용을 지급한 자
  - ©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 한 자
  - ②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 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 해야 할 자